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52
----------	-------

발의연월일 : 2025. 7. 30.

발 의 자 : 김은혜 · 김승수 · 추경호
박정하 · 서일준 · 김종양
김재섭 · 강승규 · 엄태영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

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을”로, “사업자”를 “사업자(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한정한다)”로, “31일까지 취득”을 “31일까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고품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고품을”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를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중고품의”로 한다.

3.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고품: 110분의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고품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u>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u> 수집하는 <u>사업자가</u>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u>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을</u> ----- <u>사업자(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한정한다)</u> ----- ----- ----- ----- ----- ----- <u>31일까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고품을 2030년 12월 31일까지</u> 취득----- ----- ----- ----- ----- -----

1. · 2.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u>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3. <u>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고품: 110분의 10</u> ② (현행과 같음) ③ ----- -----<u>재활용폐자원 · 중고자동차 ·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고품을</u>----- -----<u>재활용폐자원 · 중고자동차 ·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고품의</u>----- ----- ----- -----.
--	--